

公務員 및 私立學校教職員 醫療保險管理公團

療養취급 機關에서 꼭 알아두어야할 事項

I. 療養取扱機關 指定

1. 指定根據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 醫療保險法 第33條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으며 지정받은 醫療機關은 正當한 사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診療地域 設定

서울特別市, 釜山市, 각도 行政區域 單位로 11개 診療地域을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地域醫療施設의 均衡적인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3. 診療地域의 運用

被保險者의 住所地를 基準으로 하여 관할 시·도내에 소재한 療養取扱機關에서 診療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救急患者
- 당해 診療圈內의 醫療施設에서는 治療가 不可能한 사유를 당해 診療圈內의 病院級 이상의 療養取扱機關에서 인정한때
- 시·도 境域外에서 他診療地域의 療養取扱機關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公團이 인정한 지역

○ 당해 診療圈外에 출장, 여행중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公團이 인정한 때

○ 기타 公團으로부터 正當한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때

4. 療養取扱機關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 됩니다.

- 療養給與 費用의 청구 부정
- 虛偽報告
- 관제 公務員의 檢査質問등에 拒否, 妨害, 忌避한 때
- 免許取消, 資格停止處分등 행정처분을 받은 때
- 給與記錄의 不實記載
- 公團의 必要에 의하여 醫療關係團體와의 협조하에 실시하는 教育에 2회이상 正當한 사유없이 不參한 때

II. 지켜야할 事項

1. 指定書의 揭示

公團에서 발급한 指定書는 療養取扱機關의 주된 事務室등의 벽면에 揭示하여야 합니다.

2. 指定 標識板 附着

소정의 규격과 내용의 指定標識板을 제작하여 78. 12. 30까지는 반드시 기관정문등 이용자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附着 表示하여야 합니다.

3. 療養取扱機關 現況 申告

療養取扱機關으로 지정된 醫療機關은 이미 각 醫療關係團體를 통하여 교부한 療養取扱機關 現況 申告書를 작성하여 78. 12. 30까지 소속단체를 경유하여 當 公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療養取扱機關 變動申告

療養取扱機關의 名稱變更, 代表者變更, 住所地變更등 諸般變動事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적

없이 當 公團에 變動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保險給與實施 要領

1. 受給資格의 確認

給與申請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被保險者證을 제출토록 하여 住民登錄證이나 身分證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被扶養者의 本人與否를 確認함과 아울러 當해 診療地域內의 居住者 與否 (被保險者證 상단좌측에 지역표시가 되어 있음)를 確認한 다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受給資格의 확인 소홀로 非給與對象者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한때는 當해 診療費 請求에 대하여 支給拒絶을 당하게 됩니다.

2. 診療簿의 작성등

保險給與에 관한 事項을 기록한 診療簿를 일반 진료부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被保險者 또는 다른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診療上 必要에 의하여 診療記錄 (X-線 촬영필름 포함) 및 진료소견서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3. 被保險者證의 返還

被保險者에 대한 保險給與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被保險者證에 소정의 保險給與記錄事項을 작성 확인한 다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被保險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 費用의 本人 一部 負擔金 徵收

被保險者들에게 保險給與를 행하였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하여 입원의 경우는 20%, 外來의 경우는 30%에 상당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徵收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公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또는 피부 양자의 질병, 부상이고 의에 의한 것이었을 때

○ 피보험자가 正當한 이유없이 요양취급기관

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한때

Ⅵ. 診療費 請求 受給要領

1. 去來 金融機關指定

공단과 業務委託契約을 한 金融機關中 기관과의 거래가 편리한 취급점포를 선택 지정하여 앞에서 설명한 요양취급기관 현황신고서의 소정란에 기재하여 當 公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감등록등

診療費 지급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인감과 請求額 受領人을 지정하여 79.1기중에 當 公단 및 거래 金融機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등록서식 및 절차등별도 지시)

3. 診療費 請求

진료비의 청구는 月1회씩 月別로 하되 소정의 진료비 청구서에 진료비 명세서를 입원, 외래, 치과별로 구분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去來 金融機關 (취급점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취급점포에서는 등록된 인감과 지정 受領人을 확인하고 해당 진료지역 여부 및 請求書의 기재 사항등을 검토하여 심사이전에 請求金額을 지급합니다.

4. 診療費의 審査 및 支給

公團은 委託金融機關으로부터 송부된 진료비 請求內譯을 심사하여 결정된 診療費보다 이미 지급된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診療費 請求額 중에서 그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 됩니다.

위의 審査內譯과 控除內譯은 當년 요양취급기관에 매월 통보하여 드립니다.

5. 關係書式등

기타 자세한 業務處理受領 및 관계서식등은 별도 송부하여 드립니다. ◆